

「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 외 15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, 보호권, 발달권, 참여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기본이념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4조)
- 시장의 책무, 보호자의 책무, 아동의 권리(안 제5조~제7조)
- 시행계획, 아동권리보장사업 등(안 제8조~제9조)
- 사업의 운영·지원, 사업의 위탁, 지도·감독(안 제10조~제12조)
- 아동복지의 증진(안 제13조)
- 아동권리보장위원회 관련(안 제14조~제22조)
- 아동위원 관련(안 제23조~제2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아동복지법」
 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-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
○ 부서검토: 아동친화과 의견제출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, 보호권, 발달권, 참여권 보장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에 따라 아동의 권리 및 아동권리보장사업 추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, 구미시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집행기관은 구미시 아동권리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아동권리보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구미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